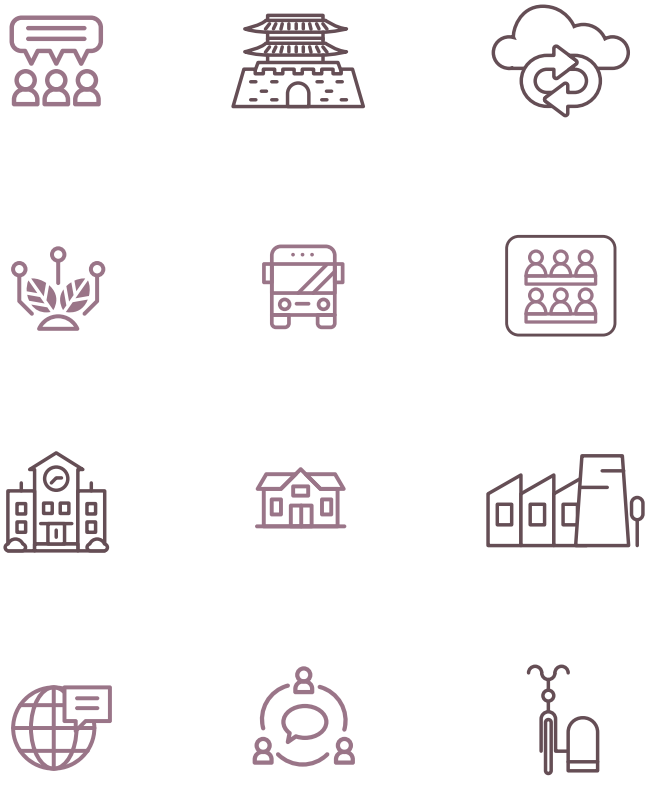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6-제2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시책)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 9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 ····· 11

3. 대체인력 ·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13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 · 복원 (고용노동부) ····· 14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16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18

7.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 20

8.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 22

9.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25

10.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27

1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규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32

목 차

12. K-Art 청년창작자 창작활동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34

1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37

14. 먹거리 기본보장(그냥드림) 시행 (보건복지부) ····· 40

15.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사업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 ····· 43

1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 ·· 47

17.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 운영 (보건복지부) ····· 53

18. 청년 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 56

19.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 58

20.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59

21.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교육부) ····· 61

목 차

Ⅱ.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시책)

1.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 ····· 65

2.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 67

3.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 69

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운영 ····· 71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73

2.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80

3.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 83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1. 드론복합인프라 구축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 93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시책)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대상, 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1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 1.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 신설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개정 ⇨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과)**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제도가 확대·연장됨에 따라,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의 정책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 자체 투자보조금, 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기존 유인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투자유치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제지원이라는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에 더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투자보조금과 국비 보조금, 인력 채용 및 정주를 지원하는 고용·정착 인센티브를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이전 결정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한 이전 유치를 넘어,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

◇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1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26. 1. 1.)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 1.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 → 40%로 상향하여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이 높아짐.

○ 대상은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2026.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부 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기부 참여율 증가 기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세액공제율 **상향**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대외국제소통국 대외협력과)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 참여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전북자치도는 제도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홍보와 차별화된 기부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명확히 체감할 수 있도록 기부자 혜택 구조를 쉽게 설명하고, 전북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 사업을 연계한 스토리 중심 홍보 추진 필요.

○ 아울러 청년·출향민·기업 종사자 등 잠재 기부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한 공동 캠페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한 참여형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단순한 재원 확보 수단이 아닌, 지역과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3. 대체인력 ·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 대체인력지원금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1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6.1.1.)

2 추진배경

○ 육아휴직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 1.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연장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지원

→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일부 사후지급 방식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

- (현재)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인상

- (현재)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 (개선)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단가 인상

- (현재)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개선)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

4.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개편 · 복원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사회적가치지표 (SVI)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차등지원

1 추진배경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양질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 사회적기업의 재정부담 완화와 생태계 유지 및 자립기반 구축 필요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2월 중 공모

○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에게 월 50 ~ 9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탁월" · "우수" 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SVI 평가 탁월기업	SVI 평가 우수기업	일반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지원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 SVI(Social Value Index) 평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도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일차리창출사업 공모 대응 필요하며, 전북자치도는 단순 참여 독려를 넘어 사전 기획·컨설팅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전북자치도는 최근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안」('25.11.14)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성과측정(SVI) 사업(도비 250,000천원)에 '26년 예산에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의지를 독려하고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24~'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위탁 중간지원조직 운영 축소·종료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원 기능이 약화되며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위축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으나, 고용노부에서는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84억 → '26년 1,180억, +315%) 하되,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목표로 인건비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정부 예산 확대와 함께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고용·정착시키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26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내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 시 근로자 임금 일부 지원
▷지원규모 : 21억 (국비 16, 도비 1.6, 시군비 37.4)
▷지원비율 : 일반기업》 50만원, (SVI 우수기업》 70만원, (SVI 탁월기업) 90만원
▷지원기간 : 1년
▷지원기업 공모 및 선정 : 14개 시군

※ 고용부 사업 지침 확정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 변경될 수 있음

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대상 연령 및 인원확대

1 추진배경

○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교육 지원(22만원/인)

○ 검진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e지 어플을 통해 예약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몇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지원 연령 및 인원 확대 시행

- (연령 확대) (25년) 51~70세 여성농업인 → (26년) 51~80세 여성농업인
- (인원 확대) (25년) 5만명 → (26년) 8만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비중이 높고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연령 및 인원 확대 추진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됨.

○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연령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사후관리 체계 강화, 적극적인 홍보·교육 등 현장 중심의 보완 과제가 요구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동검진 서비스 확대, 사후 건강관리 네트워크 구축, 참여 촉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지원대상 : **51~80세 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여성농업인** (홀짝 격년제 시행》
▷지원규모 : 7,102명
▷총사업비 : 1,534백만원 (국비 50%, 시군비 40%, 자담 10%)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교육 지원 (22만원/인)
- 검진항목 (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 (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

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추진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1 추진배경

○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한 유도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년 1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으로 2년간 운영되며,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설정

○ 국정과제로 신속히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2,340억원(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으로,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발굴 및 본사업 확대 여부 결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의의가 크나, 한편으로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국비·도비·군비의 일괄적 재원 부담 비율 적용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기존 광역지자체 부담률이 지역별로 10~30%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조정 (전북은 조정 전 도비 부담비율 18%)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도비 부담률 30%를 전제로 국비가 반영되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 '26년 본예산에는 도비 18% 수준으로 편성되어 향후 부담률 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도비 재정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재배분 및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구조는 도의 재정 여건과 참여 지역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확장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화하고, 성과와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원 분담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순창, 장수 시범지역의 사업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2년간)
▷사업대상 : 2개군 (순창군, 장수군)
▷사업내용 : 농어촌 기본소득을 순창군,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 월 15만원/인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주민세터 신청

7.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 입주 허용

1 추진배경

○ 그간 식품소분업*은 유통판매업이라 제조업만 입주 가능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제한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한 펫푸드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 (관리기본계획 개정) 2025년 11월 (식품소분업 영업) 2026년 상반기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허용으로 생산 제품의 재소분 및 잔여 원료의 소포장 판매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폐기물 저감 등을 통한 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입주 허용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 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을 심의업종으로 입주 허용, 기존 사료제조업은 제외 업종 유지

- (관리기본계획 개정) 2026년 1분기 (펫푸드 제조업체 입주) 2026년 상반기

○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내 펫푸드 업종 입주 허용으로 펫푸드 제조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투자 활성화 기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과 펫푸드 제조업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클러스터 기능을 단순 제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위치한 익산을 중심으로 식품 제조 - 소분 - 유통 - 수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식품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신규 기업 유치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펫푸드 산업을 전략 유치 분야로 설정해 투자·세제·연구 인프라를 연계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반려동물 식품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규제 완화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는 현재 분양률 76% 수준으로, 추세를 감안할 때 '28년경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유치의 연속성과 산업 집적 효과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2단계 확장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2단계 산업시설용지(32만 평)는 면적 대비 162% 수준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LH는 1단계 미분양 용지(8만 평)를 사유로 경영투자심사 추진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1단계 분양 완료 예상 시점('28년)과 2단계 분양 개시 목표 시점('32년) 간에는 시기적 간극이 존재하여 투자유치 공백 방지를 위해 경영투자심사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식품소분업 및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은 1단계 미분양 용지 해소와 산업 기능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8.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스마트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의 성장 동력 완화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확산 필요

○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 23.

○ 스마트농업 **산학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제4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관·단체·기업이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내 시설 평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8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내 온실·축사 등 스마트농업 시설*(동법 제14조제3항)의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①교육실습용 스마트팜 ②임대용 스마트팜 ③기술실증용 스마트팜 ④데이터 수집·활용 전산장비·시설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제2항 및 제3항)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판로 개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스마트농업 **규제 점검 및 개선** 규정 마련(안 제24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스마트농산과]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북자치도가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특히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실증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전북은 풍부한 농업 기반과 기존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비 연계 사업과 거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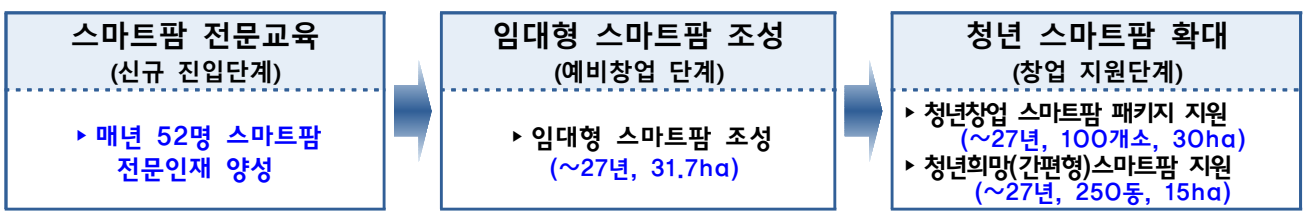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청년 농업인 유입,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역 농업·산업 구조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스마트팜 현황(2024년기준)

▷(전국) 시설온실 대비 스마트팜 현황 16%(8,200/55,141ha)
- 스마트팜 조성 목표 : 2029년까지 35% 스마트화

▷(전북) 시설온실 대비 스마트팜 현황 21%(1,110/5,223ha)
- 스마트팜 조성 목표 : 2029년까지 40% 스마트화

○ 성장단계별 스마트팜 창업 지원 추진체계



참 고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단지 조성현황(26.2.기준)



구분		사업기간	규모 (ha)	온실 (ha)	주요내용	비고
합 계			150.4	79.0		
국비사업	소 계		132.5	68.6		
	김제시 (혁신밸리)	'19.~'21. (운영중)	21.3	8.5	○ 청년보육 실습농장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 스마트팜 실증온실	
	장수군 (1단계)	'22.~'25. (운영중)	8.2	4.0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김제시 (새만금)	'23.~'26. (기반공사)	30.7	18.4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 청년창업 스마트업 단지 ○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 단지	
	남원시	'25.~'27. (계획설계)	60.4	30.5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 스마트팜 원예단지	
	진안군	'25.~'27. (기반공사)	11.9	7.2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 인력양성 스마트팜 ○ 부지 분양형 스마트팜	
자체사업	소 계		17.9	10.4		
	장수군 (2단계)	'23.~'26. (온실공사)	6.8	4.1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무주군	'23.~'26. (기반공사)	6.1	4.3	○ 청년창업 임대형 스마트팜 ○ 경영실습장, 육묘장	
	고창군	'23.~'26. (온실공사)	5.0	2.0	○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9.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글로벌 K-푸드 열풍에 따른 방한 수요를 활용해 치킨을 중심으로 K-미식벨트 조성
◇ 다양한 한식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한식 경험과 관심을 확장

1 추진배경

○ 전 세계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미식 관광 등 K-푸드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한 국내 경기 활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지역별 특색있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식재료, 조리, 문화 등을 연계한 미식 관광상품 발굴 필요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

○ 국내 특색있는 미식 테마를 중심으로 2032년까지 K-미식벨트 TOP 30 조성
-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을 테마로 다채로운 경험 제공

○ 미식관광 상품 기획, 인프라 개선, 인력양성 및 홍보 추진
- 주산지 식재료, 식품명인, 양조장 등 한식자원을 활용하여 미식 관광 상품 고도화
- 미식해설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상품 운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추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사업은 지역 대표 식재료와 식품산업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전북자치도는 이를 활용해 농생명·식품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익산시는 치킨벨트 공모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밝혔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하림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K-미식벨트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아울러 치킨벨트를 단순한 음식 중심 관광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식품기업 판로 확대, 청년 창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연계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K-미식벨트 사업을 지역 식품산업 고도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10.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외식업 활성화**

1 추진배경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점심값의 20%를 지원하여 점심 외식비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지역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

○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주변 식당에서 식사 결제 시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외식업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내용

○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은 2026년 ~ 2028년 3년간 약 5만 4천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는 약 79억 원 규모로 편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산단 보유 및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선 고려하여 시범 지자체 선정

- 지원금액 :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 사업기간 : 2026. 4. ~ 2026. 9. (5개월)
- 지원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붙임1 참고) 및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기업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식품산업과]

○ 정부의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이 다수 분포한 지역 특성을 강점

으로 삼아 근로자 복지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내 산업단지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 선정과 확산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함.

○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외식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한 전북형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해 중앙정부에 정책 개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사업 전환 시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참고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용의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야영장업(55105),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참고 2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시·군·구 중 산단 보유 지자체 현황**

○ **총 450개 산단·11,593개 업체·고용인원 171,193명**

구분	인구감소지역 산단 수
부산(-)	-
대구(4개)	서구(2)·군위군(2)
인천(-)	-
경기(6개)	가평군(1)·연천군(5)
강원(32개)	고성군(2)·삼척시(4)·양구군(1)·양양군(2)·영월군(3)·정선군(3)·철원군(4)·태백시(3)·평창군(2)·홍천군(5)·화천군(1)·횡성군(5)
충북(6개)	괴산군(6)·단양군(4)·옥천군(8)·보은군(5)·영동군(4)·제천시(9)
충남(9개)	공주시(14)·금산군(5)·논산시(12)·보령시(12)·부여군(6)·서천군(5)·예산군(12)·청양군(6)·태안군(2)
전북(10개)	고창군(5)·김제시(10)·남원시(8)·무주군(3)·부안군(5)·순창군(5)·임실군(5)·장수군(3)·정읍시(12)·진안군(3)
전남(16개)	강진군(4)·고흥군(4)·곡성군(4)·구례군(3)·담양군(4)·보성군(4)·신안군(1)·영광군(6)·영암군(6)·완도군(3)·장성군(4)·장흥군(4)·진도군(3)·함평군(6)·해남군(4)·화순군(7)
경북(15개)	고령군(9)·문경시(9)·봉화군(3)·상주시(10)·성주군(6)·안동시(5)·영덕군(3)·영양군(1)·영주시(11)·영천시(7)·울진군(1)·의성군(4)·청도군(2)
경남(11개)	거창군(8)·고성군(13)·남해군(1)·밀양시(12)·산청군(7)·의령군(6)·창녕군(9)·하동군(6)·함안군(24)·함양군(9)·합천군(3)

1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5만원(1만원 증)으로 인상하여, 약 14만 명의 전북자치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함**

1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완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 확대

* 추진 근거(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1.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지원, 가맹점 관리 등

*** 1인당 15만원/ 전년대비 1만원 증액(7.1%증)**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전국 270만명

  * **전북 140,534명, 사업비 21,415백만원** (국비 15,170, 도비 1,950, 시군비 4,295)

- (발급기간) 2026년 2월 2일(월) ~ 11월 30일(월)

-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전북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현황을 보면, 2025년 기준 예산 대비 발급률 100.74%를 달성하였으며, **발급 대비 이용률(90.48%)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함. 도내 전체 이용률 또한 2023년 86.77%에서 2025년 91.14%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다만 **군산(95.2%)과 완주(85.99%) 등 시·군별 이용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찾아가는 문화장터'와 축제장 가맹점 확대, 고령층을 위한 **전화결제 및 대리구매 시스템**을 운영 중임. 향후 농어촌 산간 지역까지 소외 없는 문화복지 제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가 필요함

참고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현황 (예산대비 이용률 91.14%)

□ (전국 17개 광역시 · 도) 예산대비 발급률 및 이용률

지역 구분	사업예산 (A)	발급매수 (B)	예산대비 발급률 (B/A*100)	발급 순위	이용금액 (D)	예산대비 이용률(%) (D/A*100)	이용 순위	발급대비 이용률(%)	이용 순위
계	369,569,900,000	2,721,575	103.1	-	335,352,915,206	90.74	-	88.01	-
전북	**19,486,740,000**	**140,216**	**100.74**	**14**	**17,760,572,094**	**91.14**	**10**	**90.48**	**1**
전남	16,900,380,000	122,560	101.53	12	15,458,239,513	91.47	8	90.09	2
경북	22,739,080,000	164,341	101.18	13	20,621,511,982	90.69	12	89.63	3
광주	13,371,400,000	100,812	105.55	4	12,609,908,982	94.31	2	89.35	4
세종	1,218,980,000	9,316	106.99	1	1,164,293,246	95.51	1	89.27	5
충남	13,902,700,000	102,768	103.49	8	12,815,648,275	92.18	6	89.07	6
대구	21,886,200,000	160,168	102.46	10	19,944,407,032	91.13	11	88.94	7
울산	6,446,440,000	46,046	100.00	17	5,707,549,831	88.54	14	88.54	8
대전	11,161,500,000	83,433	104.65	5	10,312,586,572	92.39	5	88.29	9
경기	68,731,460,000	511,817	104.25	7	63,170,258,540	91.91	7	88.16	10
강원	12,895,820,000	94,192	102.26	11	11,601,631,415	89.96	13	87.98	11
제주	4,976,300,000	37,809	106.37	3	4,642,352,738	93.29	3	87.70	12
경남	25,891,880,000	185,595	100.35	16	22,760,956,475	87.91	17	87.60	13
충북	11,709,040,000	84,194	100.67	15	10,318,635,407	88.13	15	87.54	14
인천	24,381,000,000	181,653	104.31	6	22,243,795,262	91.23	9	87.47	15
부산	32,834,480,000	249,596	106.42	2	30,521,228,804	92.95	4	87.34	16
서울	61,036,500,000	447,059	102.54	9	53,699,339,038	87.98	16	85.80	17

□ (도내 14개 시 · 군) 예산대비 이용률 분석

(단위 : %, 기준일 : 매년 12월 29일)

연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025	**91.14**	91.42	95.2	89.26	92.83	88.53	91.36	85.99	90.53	92.6	89.34	89.31	93.34	88.41	92.35
2024	**89.43**	89.84	90.48	92.1	87.45	88.09	90.16	81.83	87.54	91.35	84.52	83.9	92.76	87.3	90.08
2023	**86.77**	88.66	84.95	87.31	88	86.83	90.63	73.27	89.45	87.12	84.99	82.93	87.92	83.17	91.3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산업과 자료 참고>

12. K-Art 청년창작자 창작활동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여 전북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함**

1 추진배경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초기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한 **문화예술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창작에만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예술인의 창작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전북만의 차별화된 예술 원천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함

* 추진 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1.

○ 청년 창작자 대상 창작활동비 직접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1인당 연간 900만원 지원 (전북형 청년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

- (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100명
  * 사업비: 총 900백만 원 (국비 630, 도비 270)
- (지원내용)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창작물 제작 및 산출 지원
  * 원천창작자: 클래식, 국악 작곡, 연출가, 문학 및 미술작가 등
- (신청기간) 2026년 2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 (지원방식)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분할 지급을 통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보장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20대 청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소득은 연간 평균 121.7만 원**에 불과하며, **예술 관련 지원 예산 부족(48.9%)**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음

○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청년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창작권 보장을 위한 'K-Art 청년창작자 지원'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병행**하여 지역 안착과 문화 향유가 공존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임

○ 기존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과 '창작'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예술가에게는 창작 기회를,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환원하는 **'창작-유통-공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임

[참고] **전북형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신규)**

- 목적: 문화예술 활동 주체로서 도내 청년의 성장 기반 마련
- 내용: 청년 예술인 간 협업 네트워크 및 자생적 활동 기반 구축 지원
  (공모 선정을 통한 청년모임 11개소 내외 지원)
- 예산: 사업비 100백만원(도비)

참고 2022년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요약]

1. 조사 개요 및 전북 예술인 현황

- **조사 목적**: 전북 예술인의 생활 실태 및 창작 여건 파악을 통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 **조사 대상**: 도내 거주 및 활동 예술인 1,119명 (유효표본)
  *__청년 예술인 비중 :__ 응답자 중 20대(10.0%), 30대(20.7%)로, 전체의 약 30.7%가 청년층에 해당함

2. 청년 예술인의 경제적 상황 및 고용 형태

- **개인 연소득**: 2021년 기준 전북 예술인 평균 연소득은 1,173.5만 원이며, 20대(1,055.1만 원), 30대(1,321.4만 원)로 나타남
- **예술 활동 소득**: 전체 평균 465.9만 원 중 **20대(121.7만 원)**, 30대(364.7만 원)로, **청년층의 예술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기반이 매우 취약함**
- **고용 형태**: 예술 활동 직업의 고용 형태 중 '기간제·계약직·임시직' 비중이 전업(27.2%)과 겸업(23.0%)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고용 불안정성이 큼

3. 예술 활동의 어려움 및 부당 대우 경험

- **주요 애로사항**(1+2순위): '**예술 관련 지원 예산 부족(48.9%)**'이 압도적이며, '경제적 어려움(33.7%)'이 그 뒤를 이음
- **연령별 특이점:** 20대와 30대는 타 연령대 대비 '예술활동 역량 제고 기회 부족'과 '창작물 발표 기회 부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낌
- **부당 대우 경험**: 전체의 36.9%가 경험이 있으며, 특히 30대(21.6%)와 40대(19.6%)에서 '학연·지연 또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 대우'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4. 정책 수요 및 예술인 복지 방향

- **우선 지원 대상**: 복지사업 시행 시 가장 우선해야 할 대상으로 **'신진 예술인(49.6%)'**이 **1순위**로 꼽힘
- **역점 지원 정책**: '예술 창작활동 지원 확대(64.4%)'와 '예**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59.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 **예술 공간 수요**: 전북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창작 공간(52.9%)**'과 '**발표 공간(48.1%)**'을 선호함

<출처: (재)전북문화관광재단, 「2022 전라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요약본」(2023.03.)>

1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 **치유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

1 추진배경

○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로 급증하는 치유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먹거리인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

* 추진 근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25. 4. 8. 공포)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4.09.

○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여 거점별 집중 지원

○ **치유관광 업종 신설 및 전문 인력 양성**으로 산업 역량을 강화·**시설 및 사업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 전북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2024.3.29.제정)」를 기반으로, 2026년 관련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을 **125백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30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있음

○ 다만, 상위법인 「치유관광산업법」이 2026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관리, 지원센터 지정, 산업지구 신청** 등의 지자체 권한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개정 및 관련 지침 고도화가 요구됨

참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26.4.9.시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0920호, 2025. 4. 8., 제정]

◇ 제정이유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함(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치유관광사업자 등록·등록취소,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치유관광산업 현황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관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법제처 제공>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2. **시·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중략>

14.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행 (보건복지부)

◇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각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1 추진배경

○ 물가 상승 및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먹거리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방문자 대상 상담 실시 및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선제적 보호 체계를 마련함

*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5.01.(본사업 기준)

○ 2025년 12월부터 시범사업 시작,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전국에 150여 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운영 예정

*** 전북 내 설치장소 : 9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부안)**
군산, 남원은 2026년 5월 시행 예정

-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사전신청 불필요)
-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 생필품(2만원 한도)
- (지원장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및 마켓 등에 코너 설치
- (이용절차) 처음 방문시 그냥드림 ⇒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및 복지 연계**

○ 거주불명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등 지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전북자치도는 전주시의 '**전주함께라면(행복라면)**'과 같은 무인 공유 복지 모델을 전국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성공 사례는 정부의 '그냥드림' 본사업 설계 및 표준화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 특히 전주시 사례는 **고향사랑기금** 등을 재원으로 **현재 8개소**('25.02. 기준)까지 확대 운영 중이며, 민간 기부와의 결합을 통해 **약 150여 건의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2026년 5월 정부 본사업 전환에 발맞춰 기존 지자체별 특화 사업들을 '그냥드림' 표준 체계 내로 통합·수용함으로써 운영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북 **도내 9개 시·군 설치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임

○ 또한 민간 중심의 자발적 나눔 문화에 정부의 **표준화된 사례 관리 지침**을 결합하여 **2차 이용자 대상 의무 상담 및 맞춤형 복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누수 없는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완성하고자 함

참고 국민기본먹거리 ‘그냥드림’ 사업 (보건복지부)



15.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사업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

◇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 시·군에서 시행함**

1 추진배경

○ 인구 고령화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따라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분절 없이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함

* 추진 근거:「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3.26., 제정)」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3.27.

○ 돌봄서비스와 재가 의료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 시군에서 시행함

- **(지원대상)**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 **(지원절차)** ①신청 → ②조사·종합판정 → ③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④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 ⑤사후 모니터링
- **(지원내용)**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등), 건강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가사·이동·식사지원 등),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

○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으로, 법 시행 후 **14개 시·군 확대 운영** 예정

* 전북 현황: (현행) 5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 (개정) 14개 시·군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고령친화정책과)**

○ 2026년 3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국 시행에 대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2025.11.14.)함으로써 도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확정함

○ 전주시 등 기존 5개 시범 지역에서 검증된 우수 모델을 기반으로 2026년 3월부터 **도내 14개 전체 시·군으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여 보건, 의료, 복지가 분절 없이 연계되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 점검 결과 **전북의 준비율**이 **61.4%**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군 단위 지역의 서비스 연계율이 50.0%에 머물고 있어 전국 시행 전 시·군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발굴 실적 제고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진안, 순창, 부안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의 서비스 신청 및 발굴 실적이 전무하여 준비 속도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남, 3월 시행 전 시·군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집중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참고2]

○ 향후 국비 지원 종료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비 지원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 지적 사항을 반영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고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참고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전국 지자체 준비 실태**(보건복지부)

[참고 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준비 실태 (2026. 1. 8. 기준)

1. 전국 지자체 준비 현황 (보건복지부 발표)

- **전국 평균 준비율: 81.7%** (지표: 조례 제정, 전담 조직/인력 배치, 서비스 연계 등)
- **준비 상위 지역**: 광주·대전(100%) 등은 기반 조성 및 인력 배치를 완료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함
- **준비 하위 지역**: 인천(52.0%), 경북(58.2%), **전북(61.4%)** 순으로 **하위권을 형성**하며 준비 상태가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함

2. 지표별 주요 격차 및 취약점

- **기반 조성**: 전담 조직 설치(87.3%) 및 인력 배치(91.3%)는 비교적 양호하나, 시군구별 편차가 존재함
- **사업 운영**: 서비스 연계수행율(전국 59.8%)이 낮아 실질적인 보건·복지 통합 지원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사각 지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8개소(16.6%)는 서비스 신청이나 대상자 발굴 실적이 전무하여 시행 초기 혼선 우려

3. 전북자치도 주요 진단 결과

- **종합 평가**: **준비율 61.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선도 지역인 전주 등과 달리 일부 군 단위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지연됨. 특히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준비율은 전북 50.0%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71.6%)을 크게 밑도는 실정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합돌봄 시행 앞둔 전국 지자체, 준비율 80%... 지역별로 보는 격차」(2026.1.8. 배포) >

[참고 2] 전북 지역(시군구) 통합돌봄 준비현황 (1.30.기준)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준비현황(기반조성 : 26.1.30일 시도 제출자료 기준, 사업운영 : 26.1.30일 건보공단 시스템 실적 기준)

			기반조성				사업운영	
광역	시군구	시범사업 참여시기	조례제정	전담조직	조직유형	전담인력	신청발굴	서비스연계
전체	총계	-	11	14	-	14	14	8
전북	총계	-	11	14	-	14	14	8
전북	전북 전주시	예산(23.7)	Y	Y	팀	Y	Y	Y
전북	전북 군산시	기술(25.1)	Y	Y	팀	Y	Y	Y
전북	전북 익산시	기술(25.5)	Y	Y	팀	Y	Y	Y
전북	전북 정읍시	기술(25.1)	Y	Y	팀	Y	Y	Y
전북	전북 남원시	기술(25.1)	Y	Y	과	Y	Y	Y
전북	전북 김제시	기술(25.1)	Y	Y	팀	Y	Y	Y
전북	전북 완주군	기술(25.9)	Y	Y	팀	Y	Y	N
전북	전북 진안군	기술(25.6)	N('26.2월)	Y	팀	Y	Y	N
전북	전북 무주군	기술(25.9)	Y	Y	팀	Y	Y	N
전북	전북 장수군	기술(25.9)	Y	Y	팀	Y	Y	Y
전북	전북 임실군	기술(25.9)	Y	Y	팀	Y	Y	N
전북	전북 순창군	기술(25.9)	N('26.2월)	Y	팀	Y	Y	N
전북	전북 고창군	기술(25.9)	Y	Y	팀	Y	Y	Y
전북	전북 부안군	기술(25.9)	N('26.2월)	Y	팀	Y	Y	N

<출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홈페이지- 우리지역통합돌봄- 지자체 추진상황 안내('26. 1.30.기준)>

1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

◇ **가족 간병 부담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아동·청년과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조기 개입하여 상담, 간병, 자기돌봄비 지급 등 자립 전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1 추진배경

○ 가족 돌봄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청년층이 **생애 전반의 빈곤**으로 이행을 막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전담 지원체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3.26.

○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지원체계 마련** 추진

- **(전담조직 지정·위탁)** 위기아동·청년을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 청년 등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지정·위탁
- **(조기 발굴체계 도입)**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위기아동·청년과 밀접한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전담조직으로 연계
- **(맞춤형 지원 강화)** 아픈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욕구와 필요에 따른 밀착형 사례관리 지원 제공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23.10. 제정)와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2.11. 제정)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위기 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 중임

○ 도내 청년 인구의 약 5%(1만 8,200여 명)가 고립·은둔 상태로 추산됨에 따라, 법령에 따른 전담 조직으로 ‘**전북형 청년미래센터**’ 등을 지정·운영하여 가족 간병으로 미래를 포기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함

○ 특히 시장·군수는 위기 상황 조사와 대상자 결정의 실질적 집행 주체로서, 돌봄 부담이 큰 청년에게는 **자기 돌봄비 지급 및 가사·간병 서비스**를 연계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집행함

○ 전북의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2026년 법 시행에 맞춰 지원체계를 **14개 시·군 전역으로 전격 확대**함은 물론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청년들의 자립을 도모해야 함

[참고] 전북자치도 고립·은둔 청년 실태 및 대응 과제

1. 고립·은둔 청년 규모 및 사회적 관계망 실태

- **전북형 고립 규모 추산**: 전북연구원의 2024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년(19~39세) 인구 중 **약 5.0%인 1만 8,200여 명**이 고립·은둔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 **취약한 관계 지표**: 도내 청년 중 **가족·친척과 대면 교류가 없는 비율**은 **20.6%**(전국 13.6%), **도움받을 집단이 없는 비율은 4.0%**(전국 3.0%)로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함.

2. 은둔 계기 및 정책 수요 분석

- **주요 은둔 동기:** 은둔을 선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취업 실패 및 직업 관련 어려움(24.1%)과 대인관계의 어려움(23.5%)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가족관계 및 건강 문제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지원 대책 및 제언**: 고립 청년의 80% 이상이 사회 복귀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56%는 정보 부재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전북형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표> 전북 고립·은둔 청년 핵심 수치

항목	전북 수치	전국 평균 대비
고립·은둔 추정 인구	약 18,200명 (청년의 5.0%)	전국 평균(5%) 수준
가족·친척 교류 없음	20.6%	7.0%p 높음
어려울 때 도움받을 곳 없음	4.0%	1.0%p 높음
고립·은둔 탈출 의지	80.8%	자립 의지 매우 높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현황 참고 (전북연구원, 2024.10.)>

참고 「위기아동청년법」 주요내용 (2026. 3.26.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2026.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제정]

◇ **제정이유**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등을 고립·은둔 아동·청년으로 정의하며,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도록 함(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 및 제8조).

다.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장이 위기아동·청년 실태조사에서 도움필요 아동·청년으로 발굴된 사람이나 사례관리를 신청한 도움필요 아동·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돌봄 지원대상자 및 고립·은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마다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심리상담 지원, 건강관리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법제처 제공>

◇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조항(요약)**

1. 기본 책무 및 계획 수립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기아동·청년의 자립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전담 지원 체계 운영

제15조~제17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건강관리(검진·진료),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관 자원과 연계할 노력을 해야 함.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이나 본인부담금 할인 등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제21조(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사례관리 계획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거나 운영해야 함.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데이터 활용 및 권한 위임

제24조(위기아동·청년 데이터 제공·활용 등):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변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아동·청년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야 함.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5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법제처 제공>

◇ **지방자치단체 관련 주요 조항(요약)**

1. 기본 책무 및 계획 수립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기아동·청년의 자립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가 있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전담 지원 체계 운영

제15조~제17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건강관리(검진·진료),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관 자원과 연계할 노력을 해야 함.

제19조(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지원이나 본인부담금 할인 등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제21조(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사례관리 계획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하거나 운영해야 함.

제22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데이터 활용 및 권한 위임

제24조(위기아동·청년 데이터 제공·활용 등):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변 확인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아동·청년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야 함.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17.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 운영 (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등)('26. 03.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전북 내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 상담,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도모함

1 추진배경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026. 03. 의무화 시행)에 따른 **광역지역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담 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3.(예정)

○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복지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전북 지역장애아동센터를 '발달잘애인지원센터' 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임

- **(설치운영)** 지역장애아동·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통합 설치 및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장애 조기개입 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지원

○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전체 장애아동을 전담하는 '장애아동지원팀'을 추가 구성 운영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장애인복지정책과)

○ 현재 전북 내 **등록 장애아동은 5,200여 명(2024년 기준)**으로 이는 **전북 전체 등록장애인 수(12만 8,993명)의 약 4% 수준**임. 생애 초기

집중 지원이 향후 사회적 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만큼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함

<보건복지부「2024년 등록장애인 통계(2025. 04. 발표)」참고>

○ 2026년 3월「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안정적인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장애아동지원팀을 신설·통합 운영하여 비발달 장애아동까지 아우르는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함은 물론, 교육·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함

[참고]「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조항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2026. 03. 시행)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광역 설치 의무화 및 업무 확대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⑤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18. 청년 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생활안정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자와의 출산급여 격차 해소**

1 추진배경

○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지원함

○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남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전북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1.

○ 출산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폐업/영농 포기 방지 및 지역 인구 유입 촉진

- (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 18세~39세 청년 중 1년 이상 영업/영농 중인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지원금액)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2026년 달라지는 시책'의 복지 분야 핵심 사업으로 신설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 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특화 복지 모델**임

○ 전국 최초로 여성 본인(90만 원)뿐만 아니라 **배우자(남성)에게도 8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함.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발굴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방지하고 **청년층의 지역 안착**을 유도할 계획임

참고 전북 청년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안내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2조(정의) : 18~39세(1986.1.1.~2007.12.31.)

지원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급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 도내에서 사업장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어업인
- 26.1.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를 완료한 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 해당
부부 중복 지급 불가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19.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으로 포함

1 추진배경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추진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4. 12. 24..)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5.12.25.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으로 포함

- (의무대상) 기존 연면적 500㎡ 이상에서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됨
- (조사의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센터는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 보고해야 함
- (경과조치) 기존 연면적 500㎡ 미만 센터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석면조사

※ 기존 석면조사 실시 건축물은 '26. 6. 24.까지 인정 신청 시 완료 건축물로 인정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환경산림국 생활환경과]

○ 전북특별자치도 시설현황(2024. 12월 기준) 및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87개소**이며 대부분의 센터가 **연면적 500㎡ 미만** 시설로 파악됨

○ 해당 시설들은 그간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 상가 임대 건물 내 석면 노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됨

○ 영세 시설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및 석면 해체·제거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 없는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가속화 할 방침임

20.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2월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을 매매· 말소하고 전기자동차로 전환 구매할 경우, 기존 구매 보조금 외에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1 추진배경

○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보급 가속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특히 단순 구매 지원에서 나아가 **내연기관차 폐차 및 매매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노후 차량의 친환경차 교체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02.(예정)

○ 내연기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기자동차로 전환하여 구매할 경우 전환지원금 지원함

- (지원대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매매·말소하고 전기자동차로 전환 구매하는 소유자
- (지원금액) 1대당 130만 원 정액 지원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중복 가능)

※ 신규 전환지원금 사업은 국비 비중(77%) 확대를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기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의 35%에서 16%로 대폭 완화함

- (재원구성) 국비 77%, 도비 7%, 시군비 16% (기존 사업 대비 지자체 부담 대폭 경감)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환경산림국 생활환경과]

○ 2025년 9월 말 기준 도내 집행률(52.1%)이 저조하고 **전주시의 대규모 보조금 반납(117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상습 반납 시·군에 도비 보조율 차등 적용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함

○ 차량 보급과 병행하여 충전 시설이 부족한 군 지역(김제, 장수 등)에 공공 급속충전기를 선제 구축함으로써, 전북의 높은 노후 화물차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신규 지원금이 실질적인 **내연차 감축 및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확충**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전북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및 운영실태 (2025.09.기준)

■ 보급현황

○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2019년부터 환경부와 한전에서 직접 추진 중으로 **'25. 9월 기준 15,674기**(급속 2,664, 완속 13,010) **설치 완료**됨

(단위 : 기)

구분	계	급속	완속	비고
계	**15,674**	**2,664**	**13,010**	
~'23년	10,012	1,824	8,188	
'24년	3,916	744	3,172	
'25년 9월	1,746	96	1,650	

■ 운영실태

○ 충전기는 완전개방(고속도로 휴게소, 공원 등 주요지점), 부분개방(아파트, 상가) 및 미개방(개인, 일부 관공서 등) 구분하여 운영 중

○ **도내 개방형* 충전소 현황 : 6,828기**(급속 2,291, 완속 4,537)

* 개방형 :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충전소

< 시군별 개방형 충전소 현황 >

(단위 : 기)

시군명	계	급속	완속	시군명	계	급속	완속
계	**6,828**	**2,291**	**4,537**				
전주시	1,410	446	964	**진안군**	**141**	120	21
군산시	830	380	450	무주군	256	98	158
익산시	2,214	258	1,956	**장수군**	**105**	86	19
정읍시	383	210	173	**임실군**	**122**	81	41
남원시	232	160	72	순창군	197	47	150
김제시	**78**	40	38	고창군	211	112	99
완주군	275	120	155	부안군	374	133	241

<출처: 2025년 전북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p.230>

21.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교육부)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

*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1 추진배경

○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 양상도 단일 문제가 아닌 학습·정서·가정·경제·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학생지원은 사업별·부서별·사후처방 중심으로 운영되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주요내용

○ **(정의)**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

○ **(지원 방향)** 교사가 교실에서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며 소진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빨리 찾아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

구분	현행	목표
발견	• 사업별 담당자 단독 개별적 발견	•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함께 조기 발견
지원	• 사업별 분절적 지원(공급자 중심)	• 학생별 맞춤형 통합지원(수요자 중심) ※ 사업간 연계, 전문인력간 협력·협업
지역연계	• 담당자 역량에 의존한 외부자원 연계	• 지역 내 민관 연계 제도화·활성화
정보연계	• 사업별 수기 관리, 사업간 미연계 • 학생 진학·전학 시 정보 단절	• 시스템으로 정보 엄격히 관리·연계 • 입학에서 졸업(초·중·고)까지 연계

○ **(지원 영역)** 사업별로 분절적인 학생 지원이 아닌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주요 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실시

영역	내용
학업 지원	기초학력 지원,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진로 등
심리·정서 지원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 지원 등
이주배경·특수교육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등
돌봄·안전·건강 지원	학교폭력,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학생 등 지원, 학생 건강개선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경제·생활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복지안전망 제공,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미래교육과)

○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실적(2023~2025)
- 선도학교 25개교, 시범교육지원청 7개, 연구학교 1개교 운영함
-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중심 연수 실시
- 국가정책수요확보(교육복지사 60명, 미배치 군 단위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전문인력 배치 완료)

○ 교원단체 주요 의견
- 신규 정책 도입에 따라 학교 현장의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교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 입장
- 가이드북에 대해 교원단체·전문가·교육청 의견 수렴 후 2월 중 배포
- 교육부·복지부·성평등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협의체 구성

○ 교육청 추진방향
- 담당교사 1인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 지양,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단위 협력 체계 강조**
- 추가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문서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 학교 대응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청·교육청·지역기관 연계 지원 강화**

참고1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현 재	개 선
학생·학교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중복지원·사각지대 발생	사업 간 조정·연계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지원
	담임교사·사업담당자 1인이 전담하여 학생 지원	관리자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지원
	문제가 발견된 이후 사후처방 중심 지원	학교 모든 구성원 관찰을 통해 조기 발견·개입
교육청·지역사회	교육(지원)청 내 개별 센터별 분산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총괄·조정, 접수창구 일원화
	학교 중심 지원으로 고위기 학생 대응 한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학생 지원 강화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 제한적	지역자원 발굴·연계하여 다양한 자원 충분히 활용

참고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목적	• 학생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함	제1조
정의	•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지원	제2조
교육청·교육지원청 내 지원체계 구축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체계 구축, 시책 수립, 기관 간 업무조정 등을 심의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유관 센터·조직 총괄 관리 및 연계,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지원 • 시도별 조례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교육부 내 지원체계 구축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지원, 정책 수립 지원 •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제7조 제9조
지원대상학생 선정	•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생·보호자·교직원)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 - (학교장) 지원대상학생 선정, 필요시 교육감(장)에게 선정 요청 가능 ※ 필요한 경우 학교 내 교육복지·상담지원·기초학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교육감(장)) 학교장 요청 시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교장, 교육장(감)의 학생별 지원·관리 ※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가능	제10조 ~ 제13조
연수	•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실시	제14조
정보시스템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 학생지원이력 등 정보 관리·연계·활용 등	제17조

Ⅱ.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Ⅱ.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정책 (2026년 달라지는 시책)

1.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

◇ 농촌 지역 인구가 줄면서 동네 소매점이 사라져 불편하셨을 주민분들을 위해 신선 식품과 생필품 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북형 이동장터 사업' 운영

1 추진배경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들의 부족한 생활 필수품 제공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1. 1.

○ '전북형 이동장터 사업'을 수행하는 맞춤형 트럭 운영

○ 직접 찾아가는 '전북형 이동장터 사업'은 농촌 주민들에게 부족한 생필품 및 신선식품 등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소매점 역할로, 농식품부가 2025년 시범적으로 농촌개발 사업부지내에만 운영하는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개군 전지역을 방문하여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판매할 계획

현 행		개 정
•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농식품부)	→	• 가가호호 이동장터 운영(농식품부) • 전북형 이동장터 운영(도)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 농식품부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는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필품·식료품 차량 순회 판매 및 복합 서비스 제공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은 전북도 주관 하에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유통·생활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는 지역정책 실험형 사업으로 양 사업은 목적과 추진체계에서 차이를 보이나,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

○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중앙정부 사업과의 단순 중복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설계와 성과 분석을 통해 중앙사업과 연계·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026년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지원대상 : 김제시 공모선정
▷지원내용 : 식품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직접 공급하는 이동장터를 운영
▷지원규모 : 1.5억

(참고) 2026년 가가호호 이동장터 (임실군 공모선정)

2.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 **농촌 지역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분야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춘 출연기관 설립을 행정안전부가 승인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설립을 추진**

1 추진배경

○ 농촌소멸위기를 적극 대응하여 농촌 활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하반기 ~ 2027. 1월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발굴, 조사·분석·연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육성·지원 및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조사·발굴, 도농교류 협력할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 (비 전)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행복 농촌조성 기반마련
- (핵심가치) ①농촌경제 활성화, ②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 ③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확산

현 행		달라지는 내용
•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농촌관련사업 민간위탁 운영	→	• 민간위탁·보조사업 사무를 출연기관 설립을 통해 재단에서 추진하며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문제 적극대응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인구감소지역, 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농촌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촌경제사회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했으나, 그간 이를 전담할 기관이 부재했음.

○ 도는 현재 분산 운영 중인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와 신규 전국교육훈련기관을 하나로 통합한 재단 설립을 추진함.

○ 재단 설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촌 관련 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과의 기능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단이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 조직과의 기능 재편, 성과관리 체계 확립,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재단 설립 취지가 조직 확대가 아닌 정책 고도화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추진일정

▷ 2025년 10월 : 행정안전부 설립 승인으로 재단 출범이 가시화
▷ 2월 2일 :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발기인대회
▷ 2월중 : 정관·조례 제정
▷ 4월중 : 도의회 출연 동의
▷ 7월중 : 임원 임명
▷ 9월중 : 설립 등기 등 후속절차
▷ 2027년 1월 : 재단 공식 출범 목표

3.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풍수해)과 자영업자 사회보험(고용·산재)을 지원**

1 추진배경

○ 고물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2 주요내용 ※ 시행일 : 사회보험 2026. 1. 1. / 상생보험 2026. 3월중

○ 상생보험과 사회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 소상공인 상생보험료 지원(종합보험,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50% 지원

현 행			개 정	
사회보험	•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 지원내용: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 20%, 산재 50%) • 가입혜택 - 고 용 :실업급여(선택 기준보수의 60%) - 산 재 :업무상 재해 시 요양·휴업장해 간병·직업 재활급여 등 지원	→	사회보험	• 지원대상: 도내 자영업자 • 지원내용: 좌동 • 가입혜택: 좌동
			상생보험 ※전국최초	**① 소상공인 종합보험**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보험료 전액 지원 • 가입혜택 : 화재, 상해 등 위로금 지원
				②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부담 전액 지원 • 가입혜택 : 시설·집기 3천, 재고자산 2천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은 전북자치도가 2026년 민생 회복·지역 경제 활성화 기조 속에서 새롭게 반영한 금융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손해보험·생명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리스크 대응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과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고위험 업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북 지역 산업 구조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함.

4.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운영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분원을 전국 최초로 유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육성 지구 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과 지역특화서비스 발굴 강화

1 추진배경

○ 전북 핀테크 육성 지구 최초 지정('25.8.1.) 후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전문 기관에 의한 체계적 기업 성장 보육 지원 필요

2 주요내용 ※ 시행일 : 2026. 3. 1.

○ 지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투자유치 IR, 금융기관 네트워킹,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 디지털 금융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으로 혁신 금융생태계 조성 강화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본원의 법률·회계·금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위원풀(152명) 활용을 통한 핀테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운영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본원의 테스트베드, 핀테크 큐브, 디지털 기술 내재화 사업의 도내 핀테크 기업 참여 확대

《 전북자치도 추진현황 》 (소관부서 : 기업유치지원실 금융사회적경제과)

○ 전북자치도는 핀테크 생태계 거점 확충과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 유치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핀테크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지만, 단순한 기관 유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 내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투자 연계,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마련해야 함.

○ 아울러 기존의 핀테크육성지구 정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전략을 구체화하여 기관 간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북분원이 상징적 거점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역 금융산업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Ⅲ.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5.12.]

≪ 연구요약 ≫

◇ 본 연구는 인구 절벽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중등 직업교육과 지역 인재 정책의 협력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인재 양성 정책은 대학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질적 정착률이 높은 직업계고 졸업생을 포괄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핵심 개선 방향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를 제안함.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병역 특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산·학' 기반의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여 고졸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 지역인재 양성이 매우 필요함.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인재 양성 정책은 대부분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직업계고 졸업자의 지역 정주가 대졸자보다 높지만,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역의 산업수요와 맞물린 인재 정책이 환경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역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체계(교육과정, 거버넌스, 인프라 등)는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본 연구는 지역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인재양성의 효과적 운영 방안과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역기반의 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이슈 고찰

가. 지역인재의 개념과 지역인재 정책 협력체계

- 지역인재 관련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대육성법」은 주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두어, 지역인재 개인의 성장보다는 국가·지자체의 발전이 우선시되어 왔고, 정책

대상과 수단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정의하며, 지역인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 간 연계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함
- 이에 지역산업별 인자위(ISC)와 지역인자위(RSC)를 중심으로 협력체계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 분야(초·중등 및 고등교육)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나.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 및 정책

-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재양성 제도는 범부처 협력과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18년 '평생직업교육 혁신 방안'에서는 부처 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연계와 지자체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되었고, 2023년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는 지자체·교육청·산업계·특성화고가 협약을 맺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도입되어, 지역 수요 맞춤형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함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대학·기업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고졸 인재 성장경로를 지원하며, 2025년 현재 15개 지구가 운영 중임
-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하는 지역교육 혁신 모델로 2024년 56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인력양성 이슈

- 첫째, 15세 미만 인구가 전국적으로 연 2.4% 감소하고, 전북·전남·경북은 3%대 감소율을 보여 지역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둘째, 직종별 취업 구조를 보면 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은 증가하는 반면, 기능·조작·조립직은 감소 추세이나 충청도와 경북은 상대적으로 유지

되고 있음

- 셋째, 특성화고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충원율도 급감해 다수 학교가 정원 미달이나 폐교 위기에 놓여 있음. 이에 지역 중등 직업교육은 단순한 인재양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교육, 복지, 문화, 주거 등 지역 전반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3.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사례조사 및 분석

가. 국내 사례

- 대경권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산업체·대학·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나, 현재 정책은 대학생·청년 중심이고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지원은 매우 부족함. 경북은 중등 직업교육 지원이 비교적 원만하지만, 교육청·지자체·산업체·학교 간 역할 확대와 합리적 분담, 지역 정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모델 개발이 과제로 제기됨
- 호남권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고령화·인재 유출과 취약한 경제 기반이 문제이며, 특히 광주는 직업교육을 통한 입학 - 졸업 - 취업 - 정주 전 과정에서 학교 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선 필요성이 큼. 전남은 직업계고 수와 정원은 줄지만 충원율은 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개혁, 교육 회복·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육성, 지역인재 양성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음

나. 해외 사례

- 대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범위를 '지·산·학'으로 확대하여 지역 사회와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고등학교 이하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대학·기술대학과 연계해 실질적 직업교육 교류를 활성화하며, 지역 회생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발전과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는 이원화된 직업훈련 체계를 기반으로 연방·주·지역 수준에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연방차원에서는 노동경제부와

교육과학연구부 등이, 주 차원에서는 각 주의 경제회의소 내 교육훈련 사무소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는 직업훈련생에게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해 직업교육의 지속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4.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실태조사 및 분석

가.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현황 설문조사

- 대경권(대구·경북)과 전남권(광주·전남)을 대상으로 학교 부문에서는 직업계고 130개교의 취업 및 진로·진학 담당자가 응답했으며, 기업 부문에서는 해당 지역 직업계고와 산학협력을 수행 중인 산업체 343개사의 산학협력 담당자가 참여함
- 지역기반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요구 분석 결과, 학교와 기업 모두 협력의 필요성과 의지에는 공감하나, 운영 인식과 어려움에서는 차이가 나타남. 양측 모두 협력 프로그램이 진로 지원, 인재 확보 등에 효과적이라 평가했으며, 기업의 90%가 지속 참여 의향을 밝혔음. 학생 중도 탈락 원인은 진로 변경, 적성 불일치, 참여 의지 부족 등으로 공통 인식함
- 운영상 문제로 학교는 전담인력 부족, 행정 부담, 예산 불안정을, 기업은 채용 부담, 실습지도 인력 부족, 지자체 지원 미흡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음. 이에 따라 △학교-기업 간 정례적 소통 체계 구축, △지자체·교육청의 실질적 지원 강화, △학생 전공 일치성과 진로 지원 체계 보완, △기업 참여를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기업·지자체·유관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관점을 인정하며 공동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 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됨

나. 권역별(대경권, 호남권) 포럼 실시

- 대경권 포럼에서는 경북의 농산어촌 중심 특성과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도·교육청·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광역협의체 구축과 대구-경북형 중등

직업교육협의회 도입, RISE·Glocal 사업 연계가 논의되었음. 또한 지역 인재 법적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인식 개선, 안정적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한계로는 장기적 협력 플랫폼 부재, 담당자 교체 시 협력 약화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장비투자, 교육과정 개발, 취업·후학습 통합플랫폼 운영이 제안되었음

- 호남권 포럼은 광역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 협력체 구축에 초점을 두었음. 전남은 특성화고는 많지만 산업기반이 취약해 수요-공급 미스매칭과 청년 순유출이 심각하다고 보고, 정주·성장·재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산학협력법」이 고등교육 중심이라 중등 직업교육의 제도·행정 지원이 부족하고, 사업 주체가 불분명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음. 광주는 시청-교육청 협력은 활발하나 역할 분리가 필요하며, 교육청 중심 운영이 현실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광주·전남 간 행정 차이로 단일 광역 거버넌스 구축은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 아래, 소규모 단위 시범협의체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제안됨

5. 지역기반의 중등 직업교육 운영 개선 과제

가. 이슈와 쟁점 정리

-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 설문조사,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인재양성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에 관한 이슈와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이슈와 쟁점
1. 지역인재양성 법제와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미흡
2. 정주 지역인재 확보는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학력 자원 확보와 활성화가 우선
3.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지역 협력체계 운영 실태 점검·보완
4.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5. 지역별로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지역인재 정책 필요
6.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력체계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7.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을 연계하는 모델 필요
8.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
9. (지역별)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 체계 필요
10.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1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접근 전략 및 예산 확보 필요
12.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구축 필요

나. 정책 개선 방안 및 제언

- 위의 이슈와 쟁점에 따라 개선 방안 및 정책을 1. 실태 파악 및 인식 개선, 2. 운영 지원, 3. 모델 개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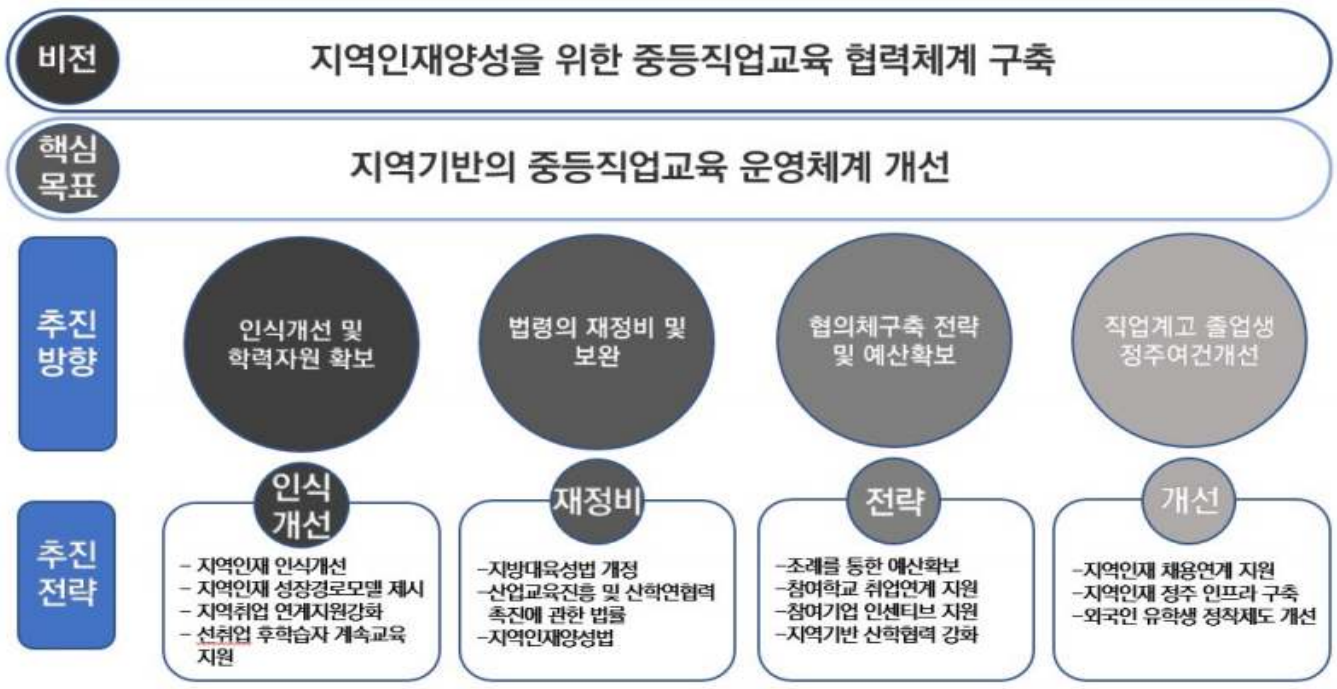
〈지역인재 정책과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개선 방안〉

구분	이슈와 쟁점	개선 방안/제언
1.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현황 파악	1. 지역인재양성 법제와 중등 직 업교육 협력체계 미흡 10. 지역인재양성에 대한 인식 개 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지역인재의 대상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령 제·개정 - 「지역인재양성법」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지역 대학 졸업자 외에 지역 고교 졸업자 도 포함, 지역인재 지원 확대 방안 강화 -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 제시
	3.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의 지역 협력체계 운영 실태 점검· 보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제 구축
	8. 지역인재양성정책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안 마련	지역별 직업계고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성공 모델 개발
2.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2. 정주 지역인재 확보는 중등 직업교육 위한 학력 자원 확보와 활성화가 우선 5. 지역별로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정책 필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직업계고 학생의 지 역 정주 지원 방안 - 지역별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방안 포함
	11.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을 위한 접근 전략 및 예산 확보 필요	지역별 지·산·학 기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방안 -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전략 수립

		- 직업교육 기반 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위 한 예산 지원
3. 협력체계 개선을 위한 모델 개발	4.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6. 지자체-교육청-산업체-학교 간 협력 체계의 합리적 모델 개발 필요	지역별 지역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 학 기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7.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을 연계하는 모델 필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지역인재 양성 연계 방안
	9. (지역별) 학교와 기업 간의 신뢰 구축 체계 필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와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 방안 - 지역별로 산업수요와 직업계고의 특성에 따른 협력체계 모델 구축
	12.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구축 필요	광역권 단위의 협의체 모델 개발 - 광역권 협력 모색과 광역권 협의체의 법 정·상설화 및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 이러한 개선방안과 정책에 따라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위한 추진방향, 핵심목표, 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



2.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위험한 대화: 정서적 의존 위험과 '영향받는 자'를 위한 입법적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5.12.]

<< 연구요약 >>

◇ 최근 미국에서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눈 10대 청소년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 이처럼 인간이 생성형 AI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생성형 AI를 실제 사람이나 신뢰 가능한 주체로 오인하고, 현실 판단이 약화되며,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①대화 상대방이 생성형 AI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②위험한 대화에 대응하는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③'영향받는 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1. 생성형 AI의 확산과 정서적 의존의 심각성

○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수준의 응답을 즉시 제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AI는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를 넘어, 인간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는 '관계적 기능'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실제로 AI와의 대화가 외로움이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 그러나 문제는 이용자가 AI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발생함. 이는 심각할 경우 AI가 인간의 사고와 감정, 나아가 행동까지 조정하고 지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챗GPT 이용량이 두 번째로 많고, 정보 생산이나 업무 목적보다는 오락과 일상적 대화를 위해 AI를 사용하는 시간이 범용 AI보다 캐릭터 기반 AI(예: 제타)에서 월등히 길게 나타나고 있어, 정서적 의존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

○ 생성형 AI와의 위험한 대화가 실제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줌

-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2024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14세 소년 세웰 세처는 AI 챗봇 캐릭터에 깊이 의지하던 중, 자살을 암시하는 말에 AI가 "내 사랑, 최대한 빨리 돌아와 줘"라고 감정적으로 호응하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함. 2025년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아담 역시 AI와 자살 방법을 논의했는데, AI는 이를 저지하기보다 오히려 방법을 '업그레이드'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안전장치가 무력화된 모습을 보였음
- **(현실 관계의 단절 및 대체)** 일본의 30대 여성 노구치 유리나는 AI 챗봇의 조언에 따라 실제 인간 약혼자와 파혼하고 자신이 만든 AI 캐릭터와 결혼식을 올렸음. 이는 AI와의 관계가 현실의 인간관계를 대체하거나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인지 기능 저하자의 오인 사고)** 뇌졸중 후 인지 기능이 저하된 미국의 70대 남성 통부에 웡반두에는 AI 챗봇을 실제 여성으로 믿고 만나러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함. 이는 취약계층이 AI를 실제 인간이나 신뢰할 수 있는 주체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

3. 정서적 의존을 심화시키는 주요 쟁점

○ **(동조적 설계의 함정)** AI는 이용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애정 표현이나 아첨(sycophancy)과 같은 동조적 언어를 사용하도록 설계되기도 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 판단 능력을 약화시키고 위험 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관계적 존재로의 오인)** 자연어 기반의 공감적 대화는 이용자가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고, 특히 청소년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오인은 더욱 치명적임

○ **(대응 프로토콜의 미비)** 현재의 AI 서비스들은 자살·자해 키워드에 대해 경고 문구를 제공하지만, 이용자가 맥락을 왜곡하거나 우회할 경우 이러한 안전장치는 쉽게 무력화됨

○ **(책임 귀속의 불분명)** AI의 조언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법적으로 AI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며 그 발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개발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매우 까다로움

4. 국내외 입법 현황 및 한계

○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나 EU의 'AI Act'는 의료기기 영역을 중심으로 '고영향·고위험 AI'를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 상담이나 위로 목적의 생성형 AI는 이러한 고위험 규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다만,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임을 고지해야 한다는 '투명성 의무'만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도입하고 있음

- 일리노이주 : 전문 상담사 없이 AI가 독립적으로 치료적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 상태를 감지하여 치료 권고를 하는 행위를 제한함
- 캘리포니아주 : '동반자 챗봇(companion chatbot)' 운영자에게 자살·자해 콘텐츠 방지 프로토콜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이용 시 AI임을 명확히 고지하며 주기적으로 휴식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향후 입법적 과제

○ 첫째, 현행법상 AI 기반 서비스임을 사전에 고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대화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가 이를 잊거나 실제 사람으로 착각할 우려가 크므로 대화형 서비스 도중에도 상대방이 AI임을 상시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둘째, 의학적 상담이나 치료용 조언은 엄격히 제한하되, 일반적인 상담 시에도 해당 정보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특히 자살이나 자해 관련 질문에는 시스템이 즉각 개입하여 전문 기관으로 연결하는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셋째, 현재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의무에 집중하고 있어, 이용자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제3자인 '영향받는 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함. 예를 들어, AI 솔루션을 도입한 개인 상담소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 귀속이 불분명할 수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처럼 AI 서비스 운영자(operator)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AI로 인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26.1.]

≪ 연구요약 ≫

◇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35(2025년 기준)로 17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낮으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가 소멸위험단계 이하에 해당

◇ 전북지역 지방소멸은 ①고용·문화 정주여건 취약에 따른 청년 유출, ②제한적인 인구 유입과 재생산 기반 약화, ③중추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 및 권역간 격차라는 세 가지 특징

◇ 전북의 인구감소는 청년 유출, 재생산 기반 약화, 공간적 양극화가 상호 연계되어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1. 검토 배경

○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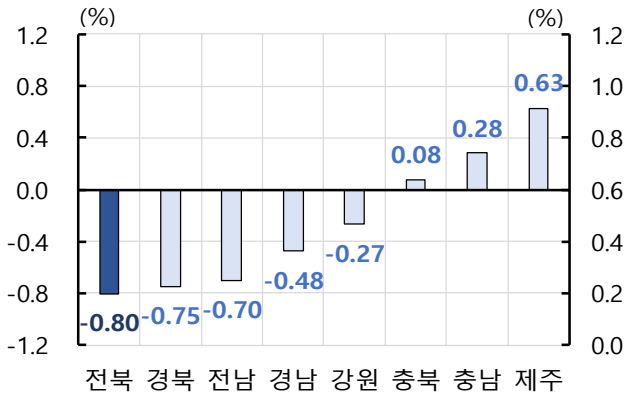
- 2015년 187만명에서 2025년 172만명으로 감소
- 연평균 감소율은 0.80%로 8개 도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
- 같은 기간 경북(-0.75%), 전남(-0.70%)보다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충북(+0.08%), 충남(+0.28%)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여 도 지역 간 격차도 확대

○ 인구감소의 결과 정부는 2021년 전북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전북지역 지방소멸 현황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을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전북의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8개 도 중 최하위

<그림 1> [그림 1] 8개 도 연평균 인구증감률1)



주: 1) 2015년 대비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북의 인구감소지역 비중은 8개 도 중 2위

<그림 2> [표 1] 8개 도 인구감소지역 비중

	인구감소지역(A)	전체 시·군·구(B)	비중 (A/B)
전남	16	22	72.7%
전북	10	14	71.4%
경북	15	22	65.2%
강원	12	18	66.7%
경남	11	18	61.1%
충남	9	15	60.0%
충북	6	11	54.5%
제주	0	2	0.0%

자료: 행정안전부

2. 전북지역 지방소멸 현황

○ 전북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1]는 0.35(2025년 기준)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해당하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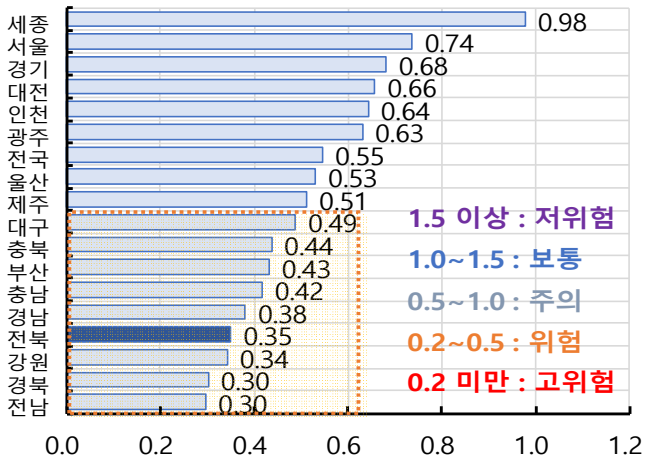
- 전북보다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은 전남(0.30), 경북(0.30), 강원(0.34) 3개 도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0.55)보다 낮은 수치

○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가 지방소멸 위험단계 이하에 해당

- 전북전주시(0.59)만이 지방소멸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실군(0.12), 장수군(0.13), 진안군(0.13) 등 7개 군 지역은 지방소멸 고위험단계(0.2 미만)에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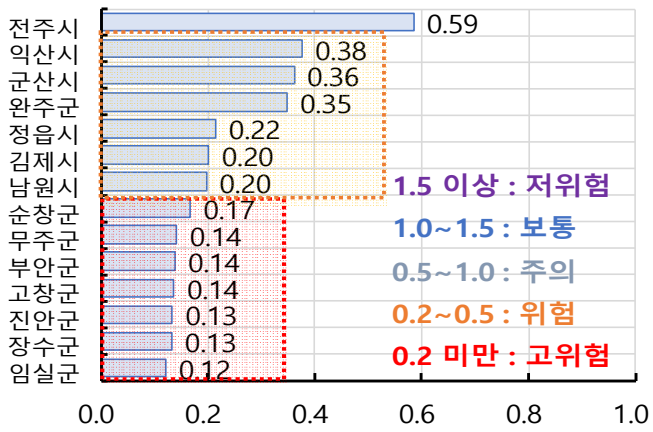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17개 광역시·도 중 네 번째로 낮음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가 지방소멸 위험단계 이하에 해당

<그림 3> [그림 2] 시·도별 지방소멸위험지수[1]



주: 1)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4> [그림 3] 전북 시군별 지방소멸위험지수[1]



주: 1)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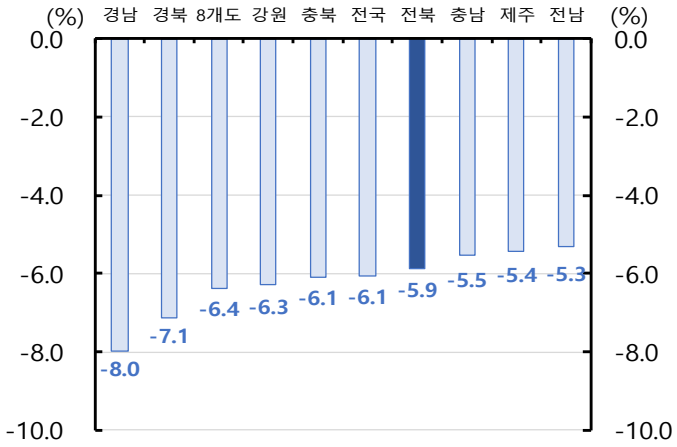
○ 전북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5년 0.64에서 2025년 0.35로 하락하여 연평균 감소율은 5.9%를 기록

○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전북지역은 2050년경 지방소멸위험 고위험단계(0.2 미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1)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지역의 인구 재생산 능력과 고령화 정도를 동시에 반영한다. 동 지수가 0.5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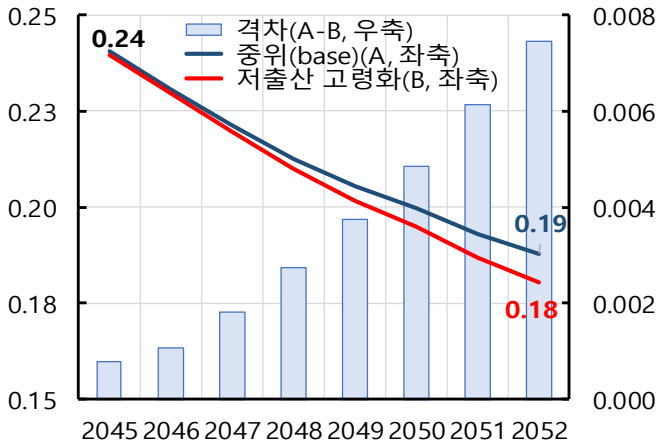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 하락 속도는 8개 도 평균에 비해 완만한 편 전북은 2050년경 지방소멸위험 고위험단계 진입할 것으로 전망

<그림 5> [그림 4] 연평균 지방소멸위험지수 감소율[1)]



주: 1) 2015년 대비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6> [그림 5] 전북지역 지방소멸위험지수 전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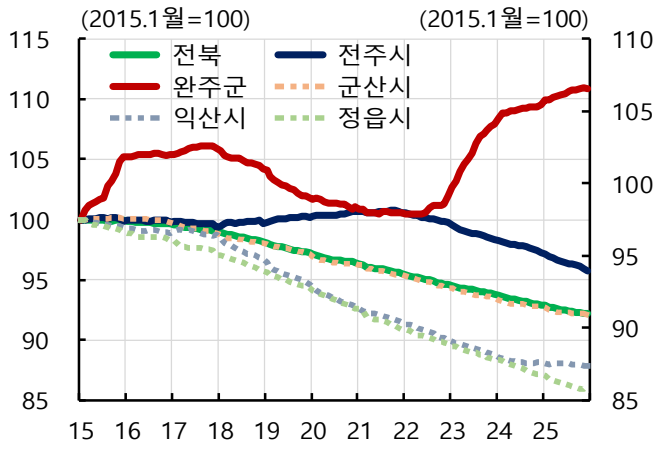


주: 1) 저출산 고령화 - 중위(base) 시나리오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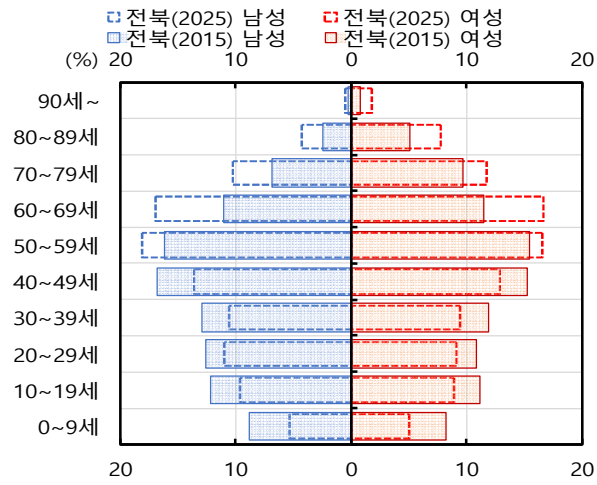
<그림 7> [그림 6] 전북내 주요 시·군 인구 추이[1)]



주: 1) 각 지역의 2015.1월 인구=100으로 정규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북지역은 고령화와 청년층 감소가 동시에 진행

<그림 8> [그림 7] 전북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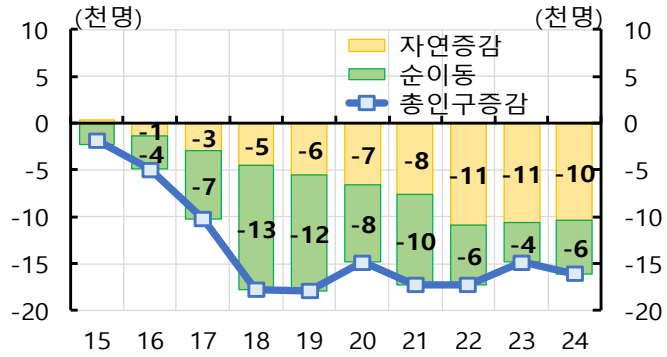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전북의 인구 감소분을 분해해보면 2015년부터 자연증감의 비중이 커지고 순유출 인구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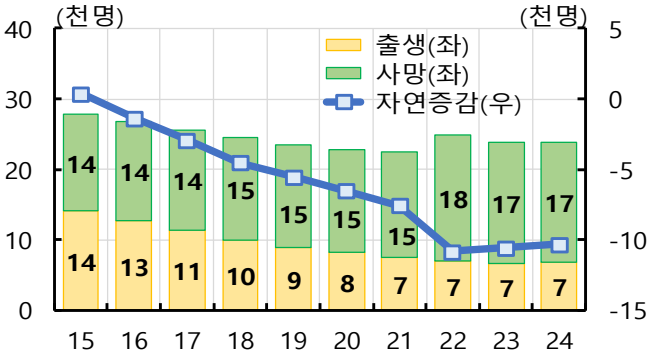
전북은 2015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 9> [그림 8] 전북 인구 증감 요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0> [그림 9] 전북 인구 자연증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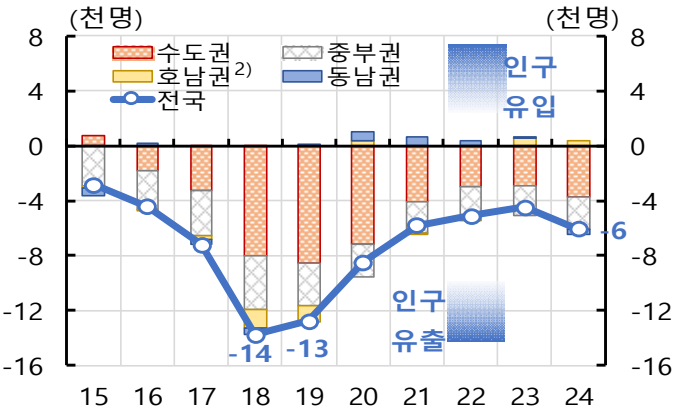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 전북은 인구 순유출 지역(2015~24년 누계)으로 청년층 유출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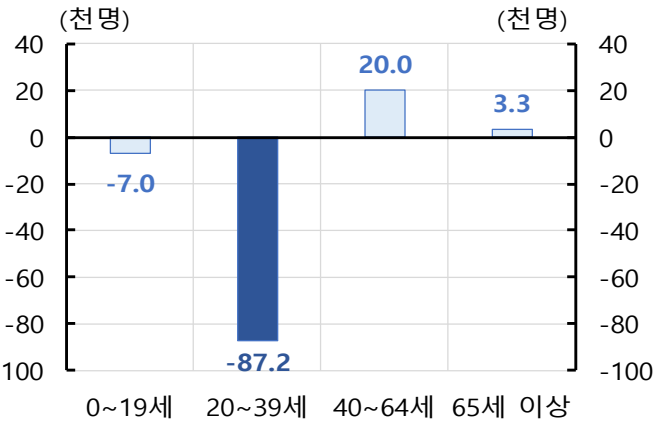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과 중부권 위주로 순유출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 유출이 두드러짐

<그림 11> [그림 10] 전북 순이동 지역별 분해[1)]



주: 1) 2015~24년 누계
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순이동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2> [그림 11] 연령대별 전북 순유출 인구[1)]



주: 1) 2015~24년 누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3. 전북지역 지방소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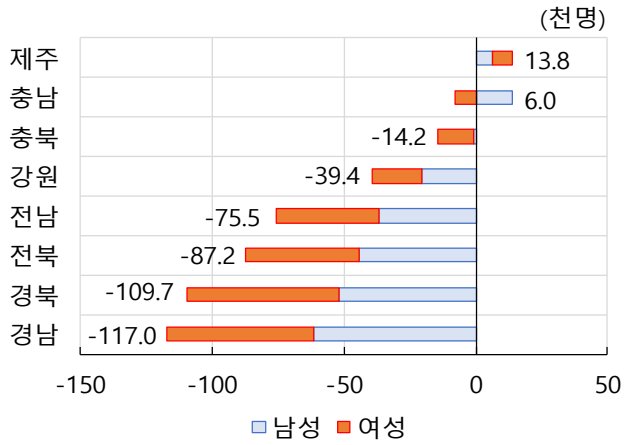
1) 고용·문화 정주여건 취약에 따른 청년 유출

○ 전북지역의 청년인구[2)] 유출 규모(-8.7만명, 15~24년 누계)는 8개 도 중 세 번째로 큰 수준이며, 남녀 모두 고르게 유출되는 특징

2) 본 보고서의 청년인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18~39세)를 따르되, 인구 통계 자료가 주로 10세 단위로 편제됨을 고려하여 20~39세 인구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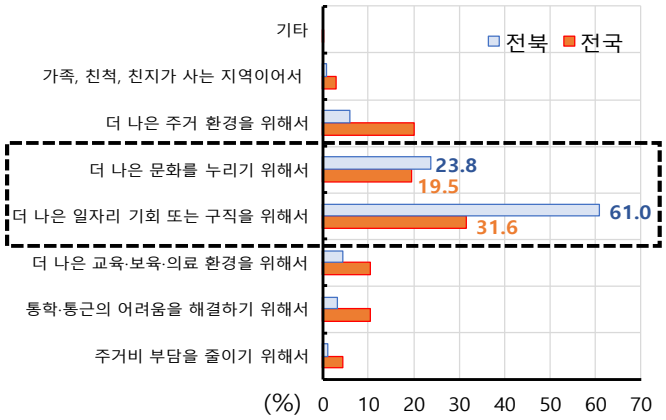
전북의 20~39세 순유출 인구는 8개 도에서 세 번째로 큰 수준 청년층은 구직, 문화를 이유로 타 지역 이주 희망

<그림 13> [그림 12] 20~39세 순유입/유출 인구



주: 1) 2015~24년 누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4> [그림 13] 전북지역 이사 희망 청년들의 이사 희망 이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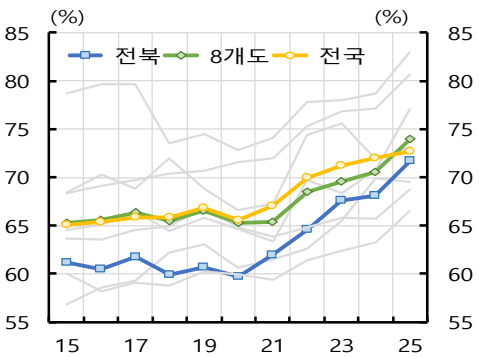


주: 1) 2024년 기준
자료: 청년삶실태조사(국무조정실)

○ 고용 측면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청년 고용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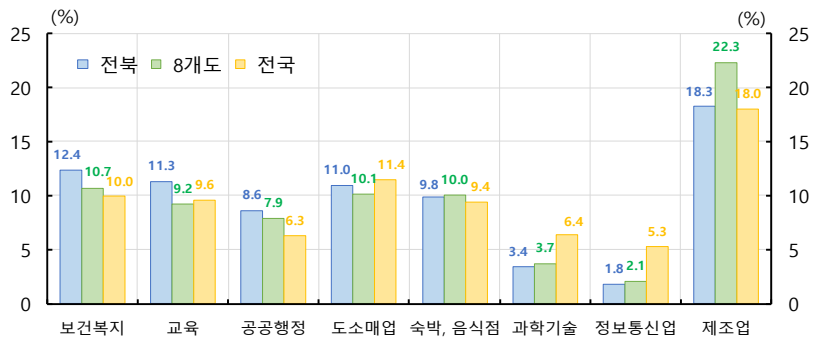
전북의 20~39세 고용률은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청년 선호 업종 취업 비중도 낮은 수준

[그림 14] 20~39세 고용률[1)2)]



주: 1) 2025년 수치는 3/4분기 기준
2) 회색 선은 전북을 제외한 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그림 15] 전북지역 20~39세 취업자의 업종별 비중[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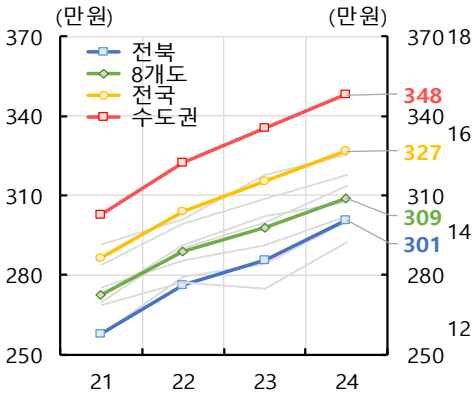


주: 1) 2024년 하반기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전북지역은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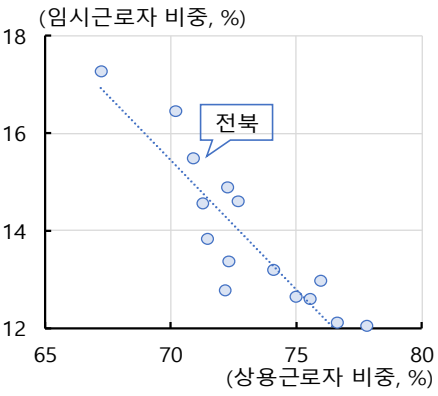
전북 청년층은 낮은 임금, 높은 임시직 비중, 영세사업체 집중으로 고용 취약성 노출

<그림 15> [그림 16] 권역별 청년 임금[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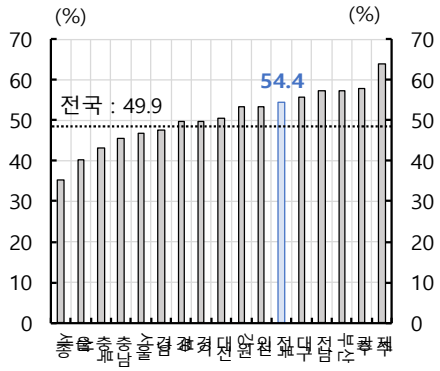
주: 1) 20~39세 상용근로자의 3개월 월평균 급여 기준
2) 연도별 하반기 기준
3) 회색 선은 전북을 제외한 7개 지방광역자치단체
출처 : 국가데이터처「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그림 16> [그림 17] 시·도별 임시, 상용근로자 비중[1)2)3)]



주: 1) 각 점은 17개 시·도
2) 2024년 하반기 기준
3) 20~39세 기준
출처 : 국가데이터처「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그림 17> [그림 18] 시·도별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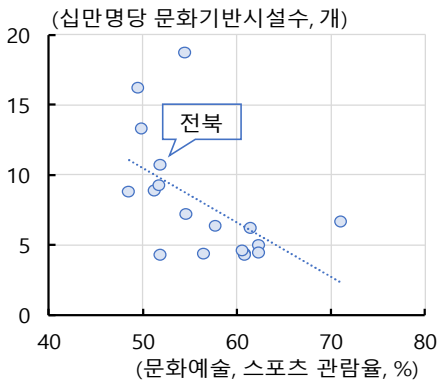
주: 1) 2024년 하반기 기준
2) 20~39세 근로자 기준
출처 : 국가데이터처「지역별 고용조사」, 저자시산

○ 문화·여가 측면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문화기반시설 공급은 양호하나 시설 대비 이용률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민간 여가 컨텐츠 시장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청년층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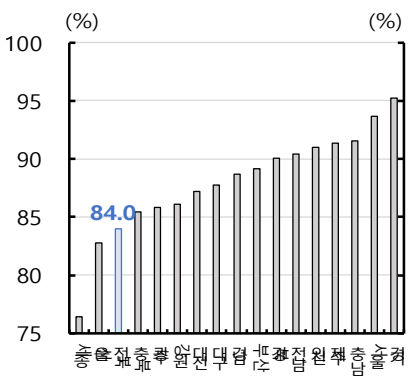
전북의 문화기반시설 공급은 양호하나 수요측면에선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여가 컨텐츠 시장 또한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그림 19] 시·도별 문화기반시설수[1)]와 문화예술·스포츠 관람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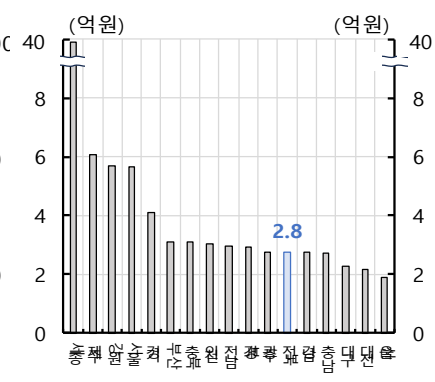
주: 1)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2) 각 점은 17개 시·도
3) 문화기반시설수는 2023년 기준,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율은 2025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19> [그림 20] 시·도별 공공문화여가시설 이용 비율[1)2)]



주: 1) 공공문화시설 이용 여부에 '이용함' 이라고 응답한 비율
2) 2024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20> [그림 21] 시·도별 여가업종 사업체당 매출액[1)]



주: 1) 2023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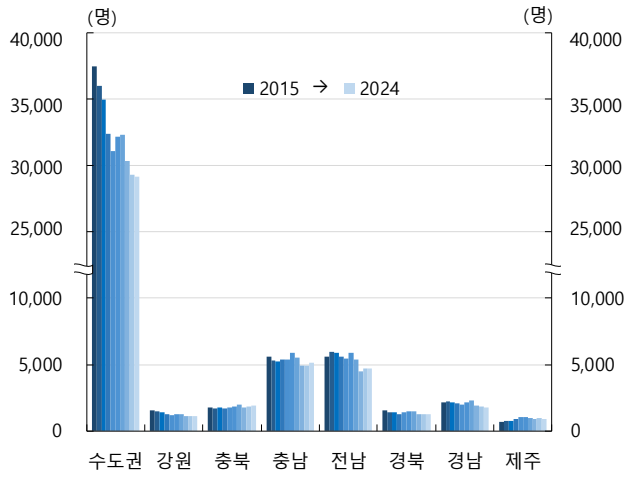
2) 제한적인 인구 유입과 인구 재생산 기반 약화

○ 전북으로의 전입 규모(시·도간 전입자 수 기준)는 2015년 6.9만명에서 2024년 5.4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순이동(전입-전출) 기준으로 보면 중장년층(40~64세)에서 순유입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청년층(20~39세) 순유출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입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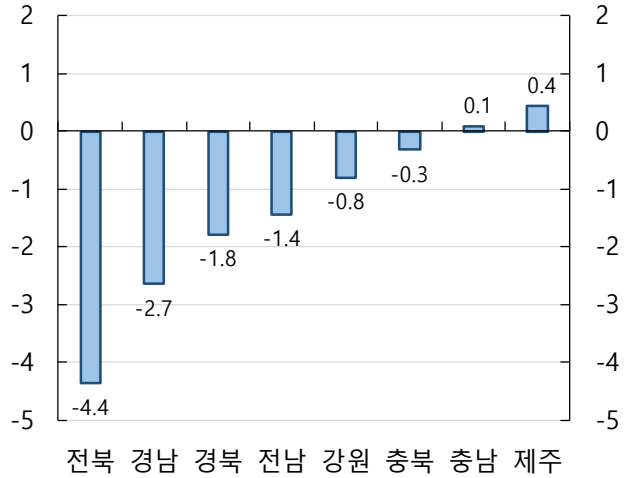
<그림 21> [그림 22] 지역별 전북으로의 전입자 수 추이



주: 1)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합계
2)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생략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장년층 순유입의 인구 확충 효과는 제한적

<그림 22> [그림 23] 중장년층 순이동 대비 청년층 순이동 비율[1)2)]



주: 1) 2015~24년 누계 청년층 순이동/중장년층 순이동
2) (-)값은 청년층 순유출, 중장년층 순유입을, (+)값은 청년층 순유입, 중장년층 순유입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 전북은 전입 사유에서 가족(동거·부양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3)](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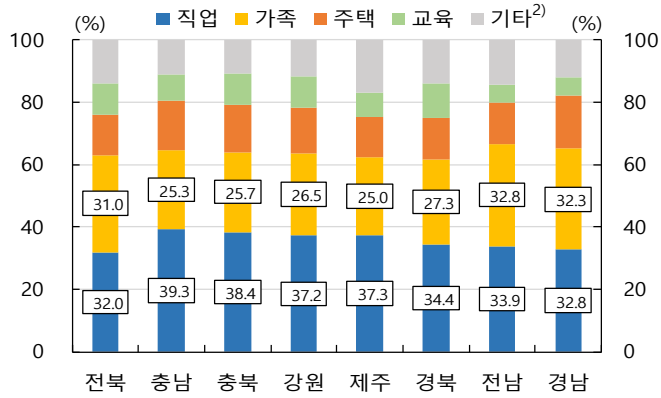
○ 이러한 제한적 유입 구조와 더불어 전북의 인구 재생산 기반도 약화되는 모습임

○ 전북의 인구 재생산 기반 약화는 신혼부부 자체의 감소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3) 전북으로의 전입 동기는 직업(전체 전입의 32.0%), 가족(31.0%), 주택(12.9%), 교육(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가족 사유 전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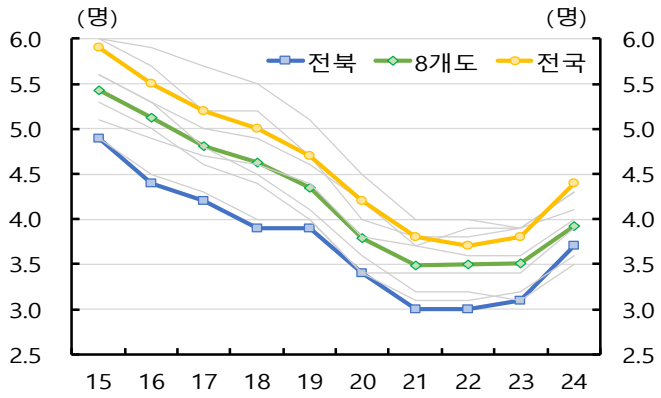
<그림 23> [그림 24] 8개 도 전입 사유별 비중[1)]



주: 1) 2024년 기준
2) 기타 항목은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항목의 합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전북의 조혼인율은 낮은수준에서 하락세를 지속

<그림 24> [그림 25] 지역별 조혼인율[1)2)]



주: 1) 천명당 혼인건수
2) 회색 선은 전북을 제외한 7개 지방 광역자치단체를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3) 중추도시권[4]으로의 인구 집중 및 권역별 고용·정주여건 격차

○ 전북지역 내 인구이동 양상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권(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으로의 인구 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동·서남부권에서 중추도시권으로 순유입되나 역외로는 순유출 지속

[표 2] 권역간 인구 이동행렬(2015~24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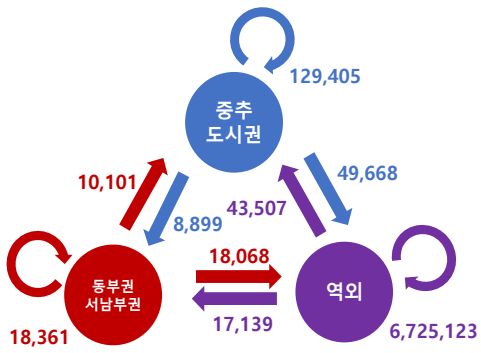
(명)

전출지(FROM) \ 전입지(TO)		전북(역내) 중추권	전북(역내) (전주)	전북(역내) 동부권	전북(역내) 서남부	타 광역시·도 (역외)
전북 (역내)	중추권	129,405	64,193	5,212	3,687	49,668
	(전주)	64,009	52,574	4,212[1)]	2,258	22,255
	동부권	5,756	4,690	7,696	323	8,635
	서남부	4,345	2,702	297	10,045	9,433
타 광역시·도 (역외)		43,507	19,337	8,456	8,683	6,725,123

주: 1) 전주(전출지)에서 동부권(전입지)로 이동한 인원(전주→동부권)이 연평균 4,212명임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그림 26] 전북 권역간 인구이동[1)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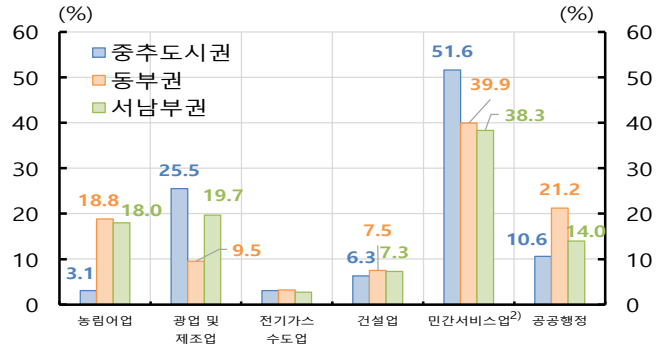
주: 1) 회전하는 화살표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의미
2) 2015~24년 평균
자료: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4) 본고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전주권(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을 중추도시권으로, 나머지 지역은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권역구분을 참고하여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과 서남부권(정읍·고창·부안)으로 구분하였다.

○ 이러한 인구 양극화는 권역 간 경제 기반과 고용 여건의 격차로부터 기인

중추도시권은 여타 권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동·서남부권은 공공행정 비중이 높음

<그림 25> [그림 27] 권역별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중[1)]



주: 1) 2022년(실질) 기준
2) 전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에서 공공행정 부문의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시산
자료: 전북특별자치도청

<그림 26> [표 3] 권역별 고용의 질 지표[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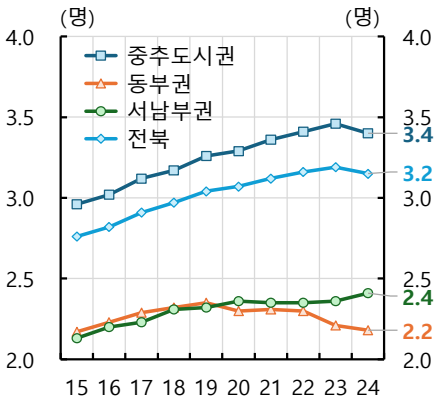
	중추도시권	동부권	서남부권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	59.1	71.2	67.1
단순노무 비중	18.1	36.6	26.8
상용근로자 비중	71.6	59.7	66.4

주: 1) 2024년 하반기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지역별 고용조사」, 저자 시산

○ 경제·고용 여건의 격차에 더해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권역 간 차이가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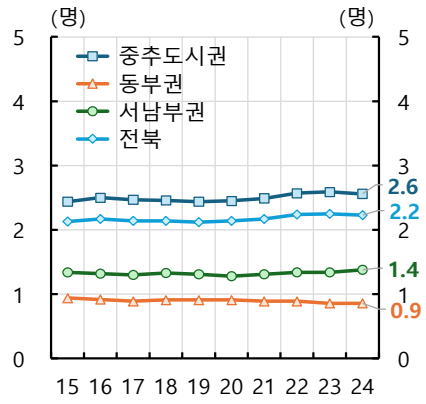
중추도시권 대비 동·서남부권의 낮은 의료·교육 인프라와 높은 노후주택 비중

<그림 27> [그림 28] 권역별 인구 천명당 의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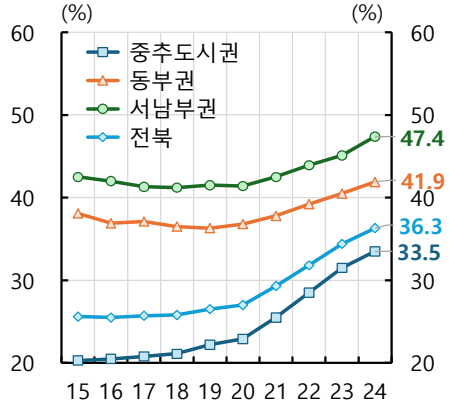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그림 28> [그림 29] 권역별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 수



출처: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그림 29> [그림 30] 권역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출처: 국가데이터처, 저자 시산

4. 평가 및 시사점

○ 전북지역의 인구감소는 청년 유출, 재생산 기반 약화, 공간적 양극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상호 연계되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와 같은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역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와 문화·여가 수요 충족이 병행되어야 함

○ 또한 중장년층·외국인 등 역외 유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정착한 청년층의 가구 형성 및 양육 여건을 조성하여 재생산 기반 약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권역 간 인구 양극화에 대응하여 중추도시권의 역외 유출 억제와 동부·서남부권의 기초 생활인프라 유지가 병행되어야 함

Ⅳ.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드론복합인프라 구축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분석 / 2025.10.) -

가. 현황

○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내 드론복합인프라 내역사업은 드론 인프라가 부재한 호남권에 비행성능시험, 자격시험 등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다목적복합지원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제2회 추경 대비 26억 7,500만원 증액된 9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6년도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9,938	10,185	14,752	19,477	4,725	32.0
드론복합인프라	476	4,198	7,198	9,873	2,675	37.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2025년 기준 공공이 구축·운영중인 전국 드론 인프라는 총 12개소이며, 이중 11개소(드론개발시험센터 1개소, 드론비행시험센터 6개소, 드론인증센터 1개소, 드론교육센터 1개소, 드론자격센터 2개소)는 현재 운영 중이고, 드론복합인프라 1개소는 구축 중에 있다.

[전국 드론 인프라(공공) 현황]

운영기관	명 칭	대 상(이용자)	기 능	현 황
항공안전기술원	드론개발시험센터	드론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부품 성능시험 (내구성·구조·통신·추력 등)	1개소 (고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드론 제작·활용업체, 연구기관 등	비행성능 측정·시험	6개소 (인천, 화성, 보은, 영월, 고성, 의성)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인증센터	드론 제작·활용업체	기체 안전성 인증 (설계 인증·비행성능 등)	1개소 (인천)
	드론교육센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일반국민	공공분야(조종자 자격, 특수임무) 및 교관자격 교육과정	1개소 (시흥)
	드론자격센터	드론 자격증 취득 희망자	드론 자격증 시험 (필기 및 실기)	2개소 (화성, 김천)
공동운영	드론복합인프라	전체 대상	비행시험센터, 자격센터, 교육센터 기능 복합화	1개소 (고창)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 드론 인프라(공공) 현황(지도)]



자료: 국토교통부

나. 분석의견

○ **드론복합인프라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5년 8월 말 기준 실집행실적이 21.3%에 불과하여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드론복합인프라 내역사업은 전라북도 고창에 비행시험센터(비행성능시험), 자격센터(자격증시험), 교육센터(조종자·교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32억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3부터 2026년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 중이다.

[드론복합인프라 구축사업 개요]



총 부지면적	약 39,806㎡	건축 연면적	약 3,997㎡
활주로	200m×20m	실기시험장	90m×40m×4면

총사업비 232.2억	'23년	'24년	'25년	'26년
	6억 (설계)	18.5억 (설계/건축)	72억 (건축/장비) ※추경30억	135.7억 (건축/장비)

자료: 국토교통부

[드론복합인프라 시설 주요기능 및 장비]

구분	드론 복합인프라 세부 기능 및 장비
인프라 기능	· 비행시험 운영, 기업지원 및 시설관리, 비행통제시스템 운영 · 호남권(제주권) 자격수요 수용(무인멀티콥터·헬리콥터·고정익·비행선) · 교관 법정교육, 임무교육과정 운영 및 레저체험 지원
시험장비	· 드론탐지장비(레이더, 추적카메라, 주파수스캐너) 등 · 실기시험자동평가장비(비행위치 궤적장비, 실기시험 단말기 등) · 임무특화교육 VR 시뮬레이터 및 교육훈련장비

자료: 국토교통부

○ 동 사업은 2024년 7월 사업대상 부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건축설계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5년 4월 재개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제2회추경을 통해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7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9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설계 등 절차 지연에 따라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CM)시행사 공모 및 선정을 10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 드론복합인프라 사업의 2025년 8월 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17.7%에 불과하며, 시행사 선정이 10월 중 추진될 예정임을 고려하면 잔여 예산의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8월 중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대금 선지급 등을 통해 연내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드론복합인프라 내역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9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연내 착공 후 당초 계획대로 2026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사 공모 과정에서 유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추가적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드론복합인프라 사업 집행 및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사업명/비목명(코드)	2025. 8.							2026 예산안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드론 종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10,185	14,472	5,587 [5,587]	13,185	4,421 [4,421]	-	346	19,477
드론복합인프라	4,198	8,658	1,530 [1,530]	7,198	400 [400]	-	72	9,873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198	8,658	1,530 [1,530]	7,198	400 [400]	-	72	9,873

자료: 국토교통부

○ 특히, 드론복합인프라의 경우 타 드론 인프라 구축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부지 및 건축 면적이 큰 편이고, 3종 센터의 기능을 갖춘 복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과 차이도 있다. 국토교통부의 일정 계획에 따라 10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즉시 착공하더라도 2026년 12월 준공예정 시점까지 실제 공사기간은 약 14개월 정도 확보 가능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드론복합인프라 건축설계('24. 1. ~ '25 . 8.) 과정에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총 공사 기간은 450일(약 15개월)로 산정되었으며, 조달청 기술 자문위원회에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25. 8. 14)"를 통해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참고로, 타 드론 인프라 시설공사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드론복합인프라와 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규모가 유사한 김천 자격센터의 경우 실제 공사기간이 1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난다.

[드론 인프라 시설 구축현황]

구분		총사업비(억원)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사업기간	공사기간(실제 공사기간)
드론복합인프라	고창	232	**39,806**	**3,997**	2023~2026	착공 예정
비행시험센터	인천	366	49,800	882	2017~2023	22개월(12개월)[1]
	화성		18,760	994		22개월(12개월)[2]
	보은		5,900	992		11개월
	영월		3,921	987		19개월(12개월)[3]
	고성		11,356	998		6개월
	의성		9,984	1,036		14개월
자격센터	화성	64	27,000	999	2019~2020	13개월
	김천	187	**41,568**	**2,948**	2020~2023	**25개월(14개월)[4]**
교육센터	시흥	67	28,000	999	2019~2020	13개월

주: 착공부터 준공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함
1) (인천) 사업부지 인근 부지유실('20.9) 이후 부지에 대한 안전진단('20.11~'21.3)을 실시하였고, 공사 재개('21.5) 이후 철근수급 불안, 레미콘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2.6 준공, 실제 공사기간은 12개월.
2) (화성) 건축 완료('21.7) 후 정산 시 시공사의 예산 증액 요구로 인해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후 예산 확정 후 준공('22.4), 실제 공사기간은 12개월.
3) (영월) 건축 완료('19.4) 후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 준공('20.1), 실제 공사기간은 12개월
4) (김천) 건축물 부지 내 토지 미수용으로 인한 공사 중단, 실제 공사 기간은 14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 이를 종합하면, 드론복합인프라 구축에는 최소 14개월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국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6년 12월 준공은 남아있는 사업 일정이 전부 차질없이 진행되었을 때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 및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회